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신현도 의원 대표발의】



2012. 6.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盧 相 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6호로 2012년 5월 24일 신현도 의원외 7인  
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  
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 60세 이하인 통장의 나이 제한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을 현행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해 온 노령층은 지역 사정에 밝아 동의 행정사무에 협조하기 쉽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시대에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갖고 현직에서 은퇴한 노령층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그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노년층 일자리 창출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장 위촉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실직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나이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음.
-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람.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2 민방위기본법

제19조 (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 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방위 대장의 지정)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의 장이 민방위 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